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1. 주간보호 감사의집 이용정원은 24명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재가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 방법
 - 1) 지역사회 내 경로 행사 및 경로당 방문
 - 2) 시설 홈페이지, 타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 등을 통하여 확보한다.
 - 3)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 4) 정기적인 팸플릿, 리플릿, 공식적인 플랑 게시 등을 활용한다.

제 2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대상자 및 법적 대리인의 요청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 3)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1) 이용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5) 이용료 납부
 -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주간보호

감사의집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라. 수급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마. 수급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 의무

5. 계약의 해지

- 1) 이용의 종결은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이용자의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본 시설 직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나. 수급자가 전염병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다. 2개월 이상 이용료가 연체될 때
 - 라. 시설에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때
 - 마.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바. 스스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전원 포함)
 - 사.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 아. 기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주야간보호시설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 다. 시설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 2)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된 경우
 -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 마.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 2)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다.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마.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바. 비급여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 1)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욕구, 신체상에 등에 따라 제공한다.
 - 2)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 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기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이용하기
 - 나.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서비스
 -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 다.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기타 재활치료
 - 라. 의료서비스
 - 외래진료 및 동행, 응급상황발생시 조치, 협약의료 기관과의 연계
 - 마. 개인활동 서비스
 - 외출시 동행, 종교활동 지원, 기타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 ※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주간보호
김시의집

2. 급여이용

- 1) 시설 이용시간은 본 시설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 까지로 한다.
- 2) 시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9:00 ~ 18:00	일요일 운영하지 않음 공휴일 운영 09:00 ~ 16:00
토	09:00 ~ 16:00	

3. 서비스 이용부담

- 1) 수급자가 정확한 장기요양급여를 알 수 있도록 시설 내부에 게시한다.
- 2)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 약재비 등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 3) 계약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4) 이 외의 서비스 내용의 부담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 5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2)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 3)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인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 할 수 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종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응급상황 서비스

- 1) 응급상황 발생시 주 보호자 또는 그 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구급대 또는 관련 협약 의료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 후송시 보호자 또는 그 외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인계하고 귀원한다.



주간보호

김시의집

2. 외래진료 서비스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 진료나 병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 자 또는 그 외 가족 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이 동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동행한 시간은 서비스제공 시간으로 포함한다.

제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직원이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상해 등을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
- 2)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니지 아니한다.
 -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대상자의 재산, 신체적, 정신적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3.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 1) 근무시간 외에 대상자가 상해,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가 직원의 지시를 무시하여 상해, 사망 하였을 때
-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4) 대상자의 지병으로 인한 사망
- 5) 수급자 본인의 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6)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적인 부정, 사기, 범죄로 인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